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회 기재위, 일시적 2주택·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등 종부세 완화법안 통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나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기회재정위위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 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남부를 연기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정망입니다.

여야는 특별공제 금액 확대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 한법 개정안 처리는 오늘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 어 가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특별 공제액 기준선을 공시가 14억 원으로 기존 11억 원에서 3 억 워 올리지는 방안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부자 감세 우려가 있다며 민주당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과도하게 낮출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설정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종교단체 종중, 종부세 법인 일반세율 신청 '내달 16일부터'

종교단체나 종중 등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대상자는 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 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 상으로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종교단체, 종중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해 특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 및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종부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 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및 시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 사업자 등에 대해 세율·기본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6억원의 기본공제를 받는다. 3~6%의 높은 수준의 단일 세율 대신 0.6%~6% 일 반 세율이 적용돼 보유 상황에 다라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어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고 해도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의 1.5배~3배를 초과하는 종부세는 내지 않는다.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홈택스·손택스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46만명에 안내…15일까지 신청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5일까 지신청을 마쳐야 하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일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근로소득자 146만명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시업자와 근로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지 만, 반기신청은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의 소득 기운 데 시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을 이용해 야 하며,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시업자도 정기신청 대상이다.

신청대상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 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며, 대출로 마련한 보증금 역시 재산계산 시 포함한다.

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메시지 또는 ARS(1544-9944) 음성 안내에 따라간편 신청할 수 있다.